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045
----------	-------

발의연월일 : 2026. 4. 2.

발 의 자 : 박홍배 · 김 윤 · 한준호
윤건영 · 윤준병 · 박 정
박희승 · 송재봉 · 이정현
김한규 · 김태년 · 진성준
민병덕 · 박지원 · 오기형
이훈기 · 김남근 · 이주희
김현정 · 김우영 · 박정현
안도걸 · 정진욱 · 서미화
한정애 · 정준호 · 김태선
최혁진 의원(2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소수주주 보호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상장회사, 특히 대규모 상장회사에서 소수주주가 기업 경영을 견제하고 그 소수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실질적으로 소수주주권의 행사가 매우 어려우므로, 회사의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행사요건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

음.

또한 주주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상장회사의 이사 등이 이에 불응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주주권 행사에 상장회사의 이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 역시 있음.

이에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을 회사의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밀히 차등화하고, 주주권 행사에 이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542조의6 및 제635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2조의6제1항 중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5 이상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주식을 보유한 자는”을 “자는”으로, “제542조에서”를 “제542조제2항에서”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권리행사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
2. 권리행사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7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

제542조의6제2항 중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천분의 5) 이상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주식을 보유한 자는”을 “자는”으로, “제542조에서”를 “제542조제2항에서”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권리행사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

유한 자

2. 권리행사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자본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

3. 권리행사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

제542조의6제3항 중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25) 이상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주식을 보유한 자는”을 “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권리행사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

2. 권리행사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자본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

3. 권리행사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1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

제542조의6제4항 중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5)

이상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주식을 보유한 자는”을 “자는”으로, “제542조에서”를 “제542조제2항에서”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권리행사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
2. 권리행사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자본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
3. 권리행사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

제542조의6제5항 중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0만분의 25) 이상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주식을 보유한 자는”을 “자는”으로, “제542조에서”를 “제542조제2항에서”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권리행사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
2. 권리행사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자본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

3. 권리행사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만분의 1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

제542조의6제6항 중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주식을 보유한 자는”을 “자는”으로, “제542조에서”를 “제542조제2항에서”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권리행사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
2. 권리행사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

제542조의6제7항 중 “6개월”을 “권리행사일 6개월”로, “제542조에서”를 “제542조제2항에서”로 한다.

제635조제1항제4호 중 “경우”를 “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항제15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635조제1항제21호 중 “제363조의2제1항, 제542조제2항 또는 제542조의6제2항을”을 “제363조의2제1항(제54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로 하고, “경우”를 “ 경우.”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항제1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1. 제363조의2(제54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42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가 제안한 사항을 상장회사의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366조(제54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42조의6제1항에 따른 임시총회의 소집청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장회사의 임시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403조제1항(제324조, 제408조의9, 제415조, 제424조의2제2항, 제467조의2제4항 또는 제54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42조의6제6항에 따른 소의 제기의 청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상장회사의 경우로 한정한다.
14. 제406조의2(제324조, 제408조의9, 제415조 또는 제54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42조의6제7항에 따른 소의 제기의 청구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상장회사의 경우로 한정한다.
15. 제466조(제54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42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상장회사의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주가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42조의6(소수주주권) ① <u>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66조(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467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u></p> <p><u><신 설></u></p> <p><u><신 설></u></p> <p>② <u>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천분의 5)</u></p>	<p>제542조의6(소수주주권) ①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u></p> <p>-----</p> <p>-----<u>자</u></p> <p><u>는-----제542조제2항에서</u></p> <p>-----</p> <p>-----.</p> <p>1. <u>권리행사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u></p> <p>2. <u>권리행사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7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u></p> <p>②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u></p> <p>-----</p> <p>-----</p> <p>-----</p> <p>-----</p>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63조의2(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③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

-----자는-----
-----제542조제
2항에서-----

1. 권리행사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

2. 권리행사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자본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

3. 권리행사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85조(제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39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④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

-----자-----

1. 권리행사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

2. 권리행사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자본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

3. 권리행사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1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66조(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⑤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회사의 경우에는 10만분의 2

-----자는-----
-----제542조제2
항에서-----

-----.

1. 권리행사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

2. 권리행사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자본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

3. 권리행사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02조(제408조의9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⑥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03조(제324조, 제408조의9, 제415조, 제424조

-----자는-----

-----제542조제2항에서-----

1. 권리행사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

2. 권리행사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자본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

3. 권리행사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만분의 1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자는-----

의2, 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⑦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06조의2(제324조, 제408조의9, 제415조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⑧ ~ ⑩ (생략)

第635條(過怠料에 處할 行爲) ① 회사의 발기인, 설립위원, 업무집행사원, 업무집행자, 이사, 집

-----제542조제2항에서-----

1. 권리행사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

2. 권리행사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

⑦ 권리행사일 6개월-----

-----제542조제2항에서-----

⑧ ~ ⑩ (현행과 같음)

第635條(過怠料에 處할 行爲) ①

21. 제363조의2제1항, 제542조 제2항 또는 제542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가 제안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단서 신설>

22. ~ 32.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0. (생략)

<신설>

<신설>

21. 제363조의2제1항(제54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경우. 다만,
제3항제1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22. ~ 3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10. (현행과 같음)

11. 제363조의2(제54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42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가 제안한 사항을 상장회사의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366조(제54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42조의6제1항에 따른 임시총회의 소집청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신 설>

<신 설>

<신 설>

없이 상장회사의 임시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403조제1항(제324조, 제408조의9, 제415조, 제424조의2제2항, 제467조의2제4항 또는 제54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42조의6제6항에 따른 소의 제기의 청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상장회사의 경우로 한정한다.

14. 제406조의2(제324조, 제408조의9, 제415조 또는 제54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42조의6제7항에 따른 소의 제기의 청구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상장회사의 경우로 한정한다.

15. 제466조(제54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42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상장

④ (생략)	<u>회사의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한 경 우</u> ④ (현행과 같음)
--------	--